

이 문서는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의 문서입니다.
정식 문서는 보건소가 발행한 일본어 문서입니다.

①

보 제 _____ 호

년 월 일

보건소장

취업 제한 등의 통지서

귀하는 감염증 예방 및 감염증 환자에 대한 의료 법률(이하 [법]이라고 함.)제 6 조에 규정된 결핵에 감염되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.

따라서 법 제 18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 2 에 기재한 바와 같이 취업 제한을 받게 되므로 주의하십시오.
취업 제한을 위반할 경우는 법 제 77 조 제 4 항 규정에 의해 50 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.

또한, 법 제 18 조 3 항의 규정에 의해 귀하는 취업제한 기간에 있어서 보건소장에 대해 그 대상자가 아닌 것의 확인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.

1 증상

(1) 증상 _____
기침, 가래, 발열, 가슴 통증, 호흡곤란, 기타 (_____), 없음

(2) 진단 방법 _____

(3) 초진 년 월 일 _____

(4) 진단 년 월 일 _____

2 취업 제한 내용

(1) 취업 제한이 되는 업무

接客업, 그 외 다수의 사람들과 접촉하는 업무

(2) 취업 제한 기간

병원체를 보유하지 않을 때까지, 또는 그 증상이 소실될 때까지

3 기타

(1) 해당 감염증의 증상이 소실되었을 때에는 보건소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(2) 이 처분에 불복할 경우는 처분이 내려진 것을 알게 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3 개월 이내에 도도부현 (都道府県) 지사에 대해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.

(3) 이 처분에 불복할 경우는 상기 (2) 의 심사 청구 이외에, 이 처분이 내려진 것을 알게 된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6 개월 이내에 도도부현 (都道府県) 을 피고로 (소송에서 도도부현 (都道府県) 대표하는 자는 도도부현 (都道府県) 지사가 됩니다.) 처분의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.

(4) 상기 (2) 의 심사 청구를 한 경우에는 그 심사 청구에 대한 판결이 있었던 것을 알게 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6 개월 이내에 도도부현 (都道府県) 을 피고로 이 처분의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
담당 _____